불량식품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

불량식품이란 위해물질을 사용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품, 허위 · 과대포장을 한 식품 등을 말하는데, 유해물질이나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는 불량식품의 제조 · 판매 금지, 불량식품신고, 불량식품회수 등을 통해 식품소비자를 보호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불량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종 식품인증마크의 확인, 식품이력추적제도,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확인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1
1.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4
1.1.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4
1.1.1. 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 4
2.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8
2.1.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8
2.1.1. 불량식품은 여기에 신고하세요 8
2.1.2. 불량식품은 모두 회수처분 됩니다. 10
2.1.3.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15
2.2.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18
2.2.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18
2.2.2. 이런 음식은 학교주변에서 판매가 금지돼요 22
3.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28
3.1.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28
3.1.1.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28
3.1.2. 식중독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31
3.1.3. 식중독 책임자는 처벌돼요 35
3.2.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36
3.2.1.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36
3.3.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39
3.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39
3.3.2. 피해보상은 이렇게 받으세요 42
4.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46
4.1.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46
4.1.1. 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46
4.1.2.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55
4.1.3.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60
4.2.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를 얻으려면? 63
4.2.1.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 얻기 63

1. 불량식품을 구별하고 싶어요

1.1. 무엇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1.1.1. 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왜 중요할까요?

▪ 훌륭한 영양상태는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때 가능한데, 어린 아이들은 음식섭취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 음식이나 무분별하게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주변이나 놀이터와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다수는 아이들 성장에 부적합한 불량식품이거나 고열량 식품이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먹을 좋은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선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어떤 것이 좋은식품인지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요?

▪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부정식품"이란 법적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식품의 기준규격에는 위생적, 영양적, 기호적,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위생적 식품의 의미를 가집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 ※ 식품위생관련 법규
>
> · 식품위생관련법규에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하에선 “부정·불량식품”을 “불량식품”으로 통일하여 명칭합니다.

불량식품의 대표적 유형

불량식품의 유형화

▪ 위와 같이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정의할 경우 불량식품의 범주가 매우 넓어지지만, 대표적인 식품위생관련 법규인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량식품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 과장광고 등을 한 식품 등 6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 “위해식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무허가 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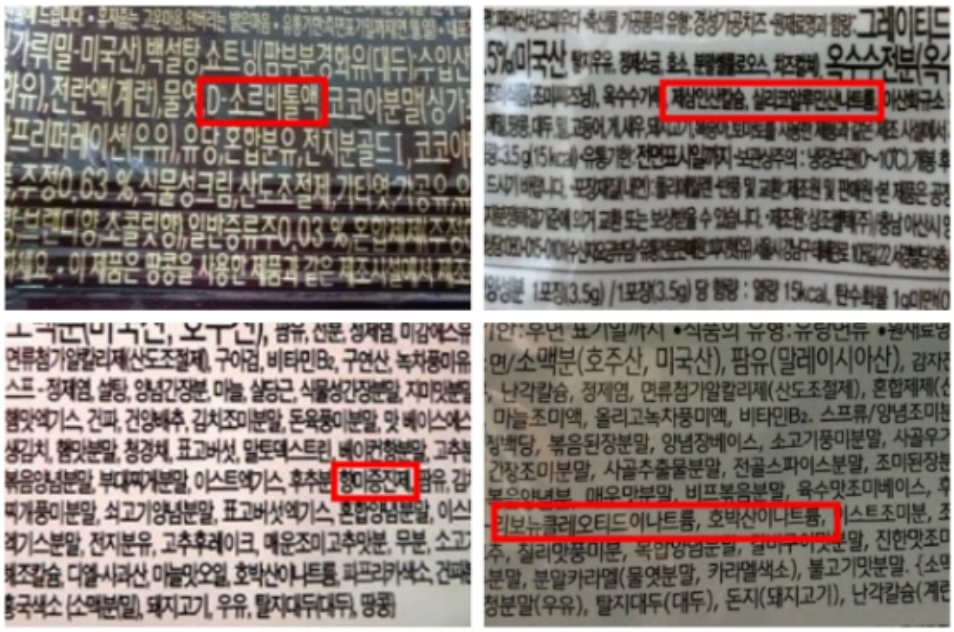
▪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이란 다음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으로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6조제1호 참조).

>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4조).
>
> ※ 그 밖에 식품첨가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포장지에서 식품에 사용된 각종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이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참조).

>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정한 ①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②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금지되는 광고행위를 한 식품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또는 학용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 시정명령 √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 품목 등의 제조정지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2. 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

2.1. 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

2.1.1. 불량식품은 여기에 신고하세요

불량식품을 신고하고 싶어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불량식품 신고

▪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방법으로 불량식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방법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9
인터넷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do)
그 밖의 방법	모바일앱(식품안전나라)

▪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함께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해야 접수·처리됩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별표).

▪ 이에 따라 불량식품으로 인해 공익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나 공익침해 신고전화(국번 없이 110번)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불량식품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위반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

※ 행위별 구체적 포상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준

▹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지급한도

▹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제93조에 위반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1인당 지급한도 제한이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을 위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여부만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를 했다고 항상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7.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9.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10.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11.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2.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2.1.2. 불량식품은 모두 회수처분 됩니다.

식품회수제도란 무엇일까요?

식품회수제도란?

▪ "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참조).

▪ 이는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이나 폐기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강제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수대상 식품

▪ 회수대상 식품은 다음을 위반한 식품입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위반 내용	회수대상 식품	근거규정
불량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함)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식품	「식품위생법」 제6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사용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위반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식품위생법」 제8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일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위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식품위생법」 제9조의3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위반	√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판매 영업자 등의 자진회수

영업자의 자진회수 조치의무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해 해당 식품 등이 위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제95조제3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호).

회수계획의 보고

▪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식품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 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 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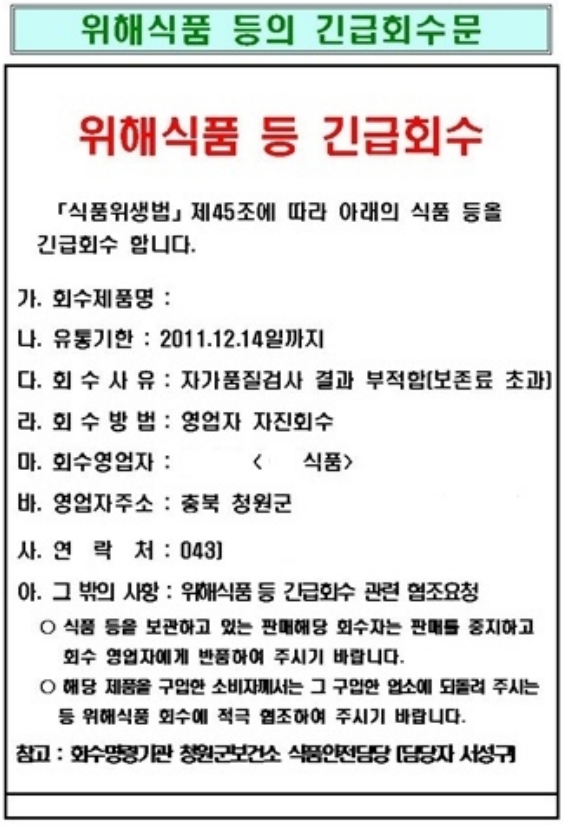
▪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의2, 제98조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호).

불량식품 등의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2호).

▪ 불량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불량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 제품명
- 회수대상 식품 등의 제조일·수입일 또는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 회수 사유
- 회수방법
-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 유통기한 : 2011.12.14일까지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보존료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 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원군

사. 연 락 처 : 04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원군보건소 식품안전담당 (담당자 서성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위해식품 긴급회수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자의 회수결과 보고

▪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불량식품 등을 회수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수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 식품 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 불량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다음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회수량	감면되는 행정처분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회수계획량의 1/3 이상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3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회수계획량의 1/4 이상 1/3 미만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강제회수(회수명령)

식품 등의 압류 또는 폐기 조치 등의 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계 공무원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자는 제조하였거나 시중에 판매한 식품에 대해서 강제회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회수대상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 ※ 강제회수(회수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불량식품 등의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회수대상 식품에 해당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 강제회수도 자진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량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불량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명령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영업의 종류
-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식품 등의 명칭(식품 등의 제조·가공, 소분·판매업만 해당함)
-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함)
-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2.1.3.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

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의 제품은 폐기 되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 누구든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이나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 이를 위반하여 1차 적발 시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2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됩니다(「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위의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사항)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3호 및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1차 적발 시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5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 ※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며,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95조제1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3호).

> ※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4.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품목 등의 제조정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위반사실 공표 등

위해식품 등의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처벌대상 식품에 해당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 강제회수도 자진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정보를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 등의 명칭(식품 등의 제조·가공, 소분·판매업만 해당함)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함)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2.2. 등하교길 불량식품이 걱정돼요

2.2.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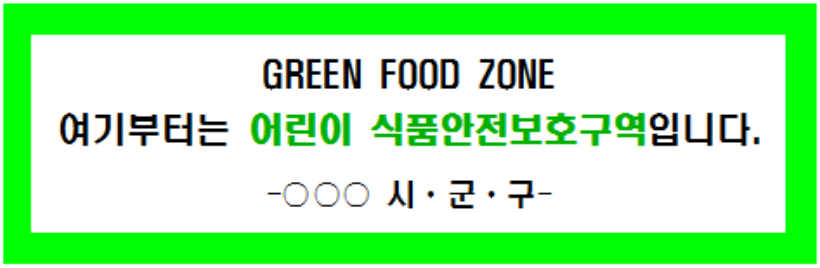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 **※ 어린이의 범위는?**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어린이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외에도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제한 및 혜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는 다음의 제한 및 혜택을 받게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일정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받게 되고, ②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 하지만 ③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구분	종류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합니다.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 피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지정 및 관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 중 다음의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판매업소”라 함)로 관리하게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4. 휴게음식점영업
5. 일반음식점영업
6.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7. 이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에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식품 판매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많은 업소들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음식점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1. 냉장·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4. 화장실의 개수(改修)·보수 비용
5.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6. 그 밖에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단서).

1.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3.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 각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에 의한 계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 전담 관리원은 군 단위에는 학교 10개당 2명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 및 자치구 단위에는 학교 20개당 2명 이상 지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4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1.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2.2.2. 이런 음식은 학교주변에서 판매가 금지돼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5호).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6호).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제3조 및 별표).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대상 어린이 기호식품</th><th>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th></tr>
<tr><td rowspan="2">간식용</td><td>가공식품</td><td>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제외), 유산균음료,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어육소시지</td><td rowspan="2">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위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해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함</td></tr>
<tr><td>조리식품</td><td>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td></tr>
<tr><td rowspan="2">식사대용</td><td>가공식품</td><td>면류(용기면만 해당),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td><td rowspan="2">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함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함
5. 위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td></tr>
<tr><td>조리식품</td><td>햄버거, 피자</td></tr>
</table>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기준은 카페인 함량을 ㎖ 당 0.15㎎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커피 및 다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5. 나. 참조).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품의 영양표시정보를 위의 기준과 비교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를 판별할 수도 있지만 해당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식품정보를 고열량저영양판별프로그램에 식품의 유형과 제품명, 1회 제공량(g/ml), 제품의 영양성분함량 등을 입력하면 식품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가 제한돼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는 금지하여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2항 단서).

▪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미리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처벌을 받아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제1호).

▪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4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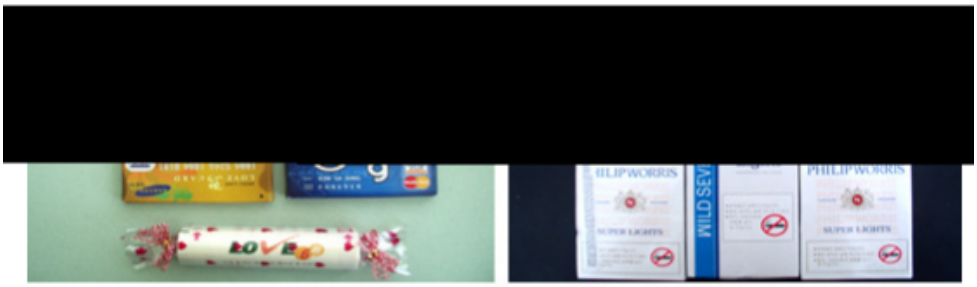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금지

정서저해 식품은 판매를 제한할 수 있어요

▪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과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정서저해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및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2조).

-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다음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 √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 √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사행심을 조장하는 키드, 복권 모양의 과자 건전한 정서를 해하는 담배 모양의 과자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있는 식품

<사진출처: 대한민국 정부 대표블로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정서저해 식품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한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

어린이의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 금지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식품은 광고가 금지돼요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열량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



<장난감을 이용해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식품은 광고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TV 광고를 한 자는 1천만원,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한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광고가 금지돼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TV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2항).

※ 광고시간의 일부가 제한되거나 광고가 금지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광고제한 및 금지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제2조제1항제1호).

▪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

올바른 어린이식품 구입 요령

최근 어린이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영양 균형이 잡힌 식품을 어린이들이 제대로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올바른 구매 요령이 필요합니다.

1.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가급적 구매를 자제하세요.

카페인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콜라, 초콜릿 등 일반 식품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는 데다 최근 시험 기간 중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를 초등학생들도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의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2.5mg으로, 몸무게가 30kg인 어린이의 경우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75mg에 해당되어 에너지드링크 1병(62.5mg)만 마셔도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에 근접하게 됩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세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 비만유발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매점 등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습니다.



3. 장난감 등 미끼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의 상품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 장난감, 게임머니 등 미끼상품을 같이 넣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끼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 장난감이나 기타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방송, 라디오, 인터넷)는 금지됩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참조>

3. 불량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3.1. 식중독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3.1.1.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식중독 증상과 발생원인

식중독이란?

▪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

※ ‘장염’이라는 말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집단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에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식중독의 증상

▪ 식중독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소화기 증상과 전신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구분	식중독의 구체적 증상
소화기 증상	섭취한 음식물은 소화관 내에서 각 영양소로 잘게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독소가 소화관의 상부에 있는 경우 구토를, 하부에 있는 경우는 설사를 통해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전신 증상	미생물의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고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세균이 장벽에 붙거나 뚫고 들어가 발생하는 식중독은 구토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과 함께 전신에 열까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의 경우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식중독 발생원인

▪ 식중독은 그 원인에 따라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과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구분합니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과 화학적 식중독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균성 식중독이 식중독의 가장 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식중독 원인에 따른 식중독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원인균 및 물질
미생물	세균성	독소형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제스 등
		감염형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여시니아,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바이러스성	공기, 접촉, 물 등의 경로로 전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간염 A 바이러스, 간염 E 바이러스 등
화학물질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에 의한 중독	복어독, 시가테라독
		식물성 자연독에 의한 중독	감자독, 버섯독
		곰팡이 독소에 의한 중독	황변미독, 맥각독, 아플라톡신 등
	인공화합물	고의 또는 오용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본의 아니게 잔류, 혼입되는 유해물질	잔류농약, 유해성 금속화합물
		제조·가공·저장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지질의 산화생성물, 니트로소아민
		그 밖의 물질에 의한 중독	메탄올 등
		조리기구·포장에 의한 중독	녹청(구리), 납, 비소 등

식중독 통계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위해·예방-식중독 정보-식중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예방

일반적인 식중독 예방 수칙(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구분		예방 수칙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여름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가정이나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취급, 조리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습니다.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맙시다. √ 한번 조리된 식품은 철저하게 재가열한 후 먹습니다. √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봉지에 싼 후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 부엌 내 모든 곳을 청결히 유지하고 조리대, 도마, 칼, 행주의 청결에 특히 주의합니다. √ 상가, 예식장, 수학여행 등 집단 급식에는 날음식 접대를 피합시다. √ 생선을 손질할 때는 아가미, 내장 등을 제거한 후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 끓여 먹고 칼, 도마를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육류, 어패류를 만지지 맙시다.
겨울철 식중독 예방 수칙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주로 발생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개인의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분변에 의해 이차 감염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 오염된 지하수로 처리한 식재료 등을 날로 섭취할 경우 발생합니다.	√ 식품 조리 종사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음식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습니다. √ 식중독 환자의 구토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오물은 비닐 봉투에 넣어 봉하여 처리합니다. √ 구토물로 오염된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락스)로 신속하게 소독하여 노로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합니다. √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이불이나 의류는 비누와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물 취급자는 완치 후 3일 정도는 조리 업무에 종사하지 맙시다.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그림.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 원칙〉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식당 및 대량조리 식품 취급소에서의 식중독 예방 수칙(보건복지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참조).

-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음식을 다루기 전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식품은 충분히 가열, 조리(70°C 이상에서 30분 이상)하고 조리가 끝난 식품은 넓은 그릇에 담아 편 후 신속하게 냉각합니다.
-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두지 말고 10°C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냉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냉장고 부피의 약 70% 정도만 채웁니다.
- 어패류, 식육 등은 영양이 풍부하여 미생물 증식에 의한 부패 변질의 위험이 높아 충분한 가열, 조리가 필요하고 취급 및 관리에 주의합시다.
- 대량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가열 조리한 식품과 비가열 식품의 상호접촉으로 인한 교차 및 이차 오염에 유의합니다.
- 대량의 조리식품을 야외로 운반할 경우에는 단열재로 포장하거나 보냉 장치를 구비한 용기에 담아 운반, 보관하고 목적지에 도착 즉시 섭취합니다.
- 장례, 결혼, 모임 등에 제공되는 식사는 가열 조리된 식품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회, 조개류, 계란구이, 햄, 소시지 등 식육제품과 가열조리가 불가능한 샐러드 사용은 피합니다.
- 냉장, 냉동식품을 상온에 보관하면 식중독균이 급속히 증식하므로 섭취 직전까지 냉장상태를 유지합니다.
-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식중독균의 증식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장마철 식중독 발생률에 특히 주의합니다.

3.1.2. 식중독 발생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 설사·복통·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중독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국민안전24-행동요령-국민행동요령-식중독).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하세요.

▪ 갑작스러운 구토나 설사, 근육경련, 의식장애, 전신에 열까지 나는 등 식중독 증세가 의심될 경우에 가장 먼저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휴일 또는 한밤중에 증세가 나타날 경우는 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이에 따라 식중독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에서 내 주변의 응급의료정보(응급실·병의원·약국)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응급실, 병·의원 및 약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에 관한 원인조사 및 보고

식중독 진단의사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중독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제1호).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1.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1.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 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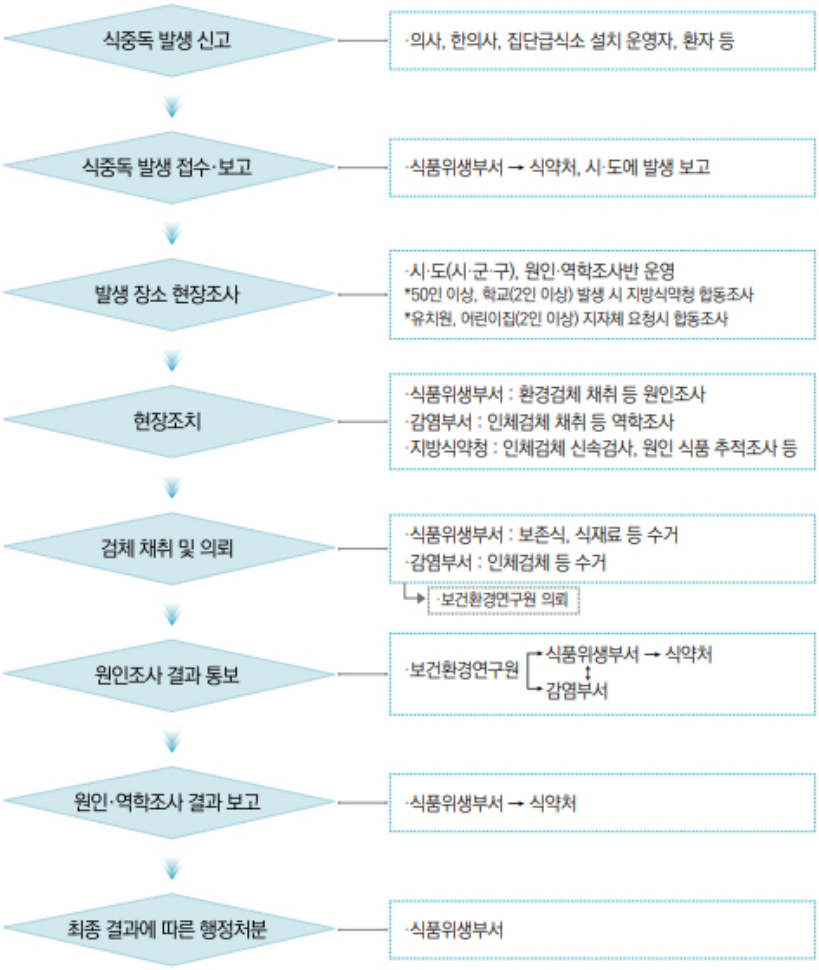
> ※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2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도 식중독발생 시 보고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제2호).

> ※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2호).

<식중독 대응체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표준업무 지침(2020), 34쪽 참조>

보건소의 식중독 원인조사

▪ 원인조사 사항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식중독 진단의사 또는 학교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식중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발생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 ※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3. 식중독 책임자는 처벌돼요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이 콘텐츠의 『불량식품 판매자는 처벌돼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100조).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제4호).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집단급식소란?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 및 제101조제1항제3호).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1조제4호).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

▪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 학교장이나 그 소속 교직원은 해당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를 받습니다(「학교급식법」 제22조제1호).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

▪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제2항제1호).

3.2.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이 원인일까요?

3.2.1. 이물 발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물발견 시 대처요령

이물(異物)이란?

▪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이물의 구분 및 종류

▪ 이물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

분류	이물의 종류
동물성	머리카락, 혈액, 손톱, 파리, 모기 등 동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식물성	나무조각, 종이, 실, 곰팡이 등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광물성	못, 유리, 비닐, 플라스틱, 고무 등의 금속, 광물, 수지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물질

▪ 식품은 수많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성분을 곰팡이나 벌레 등으로 오인·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 이물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 참조).

<이물로 오인하기 쉬운 것들>


(덧가루, 곰팡이로 오인)


(파인애플심, 실로 오인)


(씨앗, 벌레로 오인)

이물이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

거짓 이물발견 신고를 하면 처벌받아요

▪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합니다.

▪ 블랙컨슈머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제3호).

식품판매자 등의 이물보고 의무

식품판매자 등은 이물발견 시 보고를 해야 해요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 및 각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 위와 같이 발견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및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분		이물의 종류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 기생충 및 그 알(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돌, 모래 등 토사류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이물발견 보고 방법

▪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서식).

▪ 이물발견 보고를 하려는 식품업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물발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 이물 발견 사실이 알려지면 영업손실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물발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식품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물보고를 해야 합니다.

▹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제2호).

▹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러목).

▹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를 지체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러목).

식품등의 오염사고 보고 의무

산업재해로 식품등에 오염사고 발생 시 보고를 해야 해요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①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거나, ②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분진·화학물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함)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의2제1항·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

위반 시 제재

▪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의2).

▪ 또한, 오염사고 보고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머목).

3.3. 불량식품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3.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제3자에 의한 알선·중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구분		내용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 가능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 가능

▪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형	적용 원칙
1.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2.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위 기준이 되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재화 등의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 다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1).

구분		분쟁 해결 기준
환급 등의 기준	환급 비용의 부담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환급·수리·교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그러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손상, 지정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설치로 인해 재화 등이 변경·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환급 기준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재화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그러나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함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함
품질보증서의 교부·표시에 관한 기준		√ 사업자는 재화 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과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재화 등에 표시해야 함 √ 그러나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음

품목별(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위 대상 업종과 품목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대상품목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를 경우 불량식품에 따른 식품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1, 별표 2 제1호 및 제2호).

품종	해당품목	분쟁유형	해결기준
과일 야채류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1) ~ 4)의 경우 해당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 6)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주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소비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1) ~ 4)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 6)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과자류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넥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빙과류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낙농제품류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통조림류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제빵류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설탕 제분류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식용유류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 등		
고기 가공식품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다류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면류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자양식품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주류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도시락		
찬류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냉동식품류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먹는샘물	먹는 샘물		

3.3.2. 피해보상은 이렇게 받으세요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이용하기

▪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로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소비자단체 이용하기

▪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 이에 따라,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식품 관련 분쟁조정 결정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 이물 혼입으로 손상된 치아 치료비 배상 요구한 사건**
>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1.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12. 25. 조리하여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
> (판단)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이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여 이물질이 일부 혼입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스파게티를 먹던 중 이물에 의해 신청인의 치아가 파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 한편, 신청인의 이 사건 파절된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치아가 2002년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비를 포함한 치료비 67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0,960원을 지급하고 스파게티 정상 제품을 교환해 주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변질된 음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0. 15. 편의점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비닐팩 음료인 '제로칼로리 **맛(150g)' 제품 4개(이하 '이 사건 음료'라고 함)를 구입한 후 점심시간에 1개를 마시려고 개봉하였는데 비닐팩 마개 주위에 검게 탄 흔적이 있었고, 투명색인 비닐팩 내용물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어 당시의 충격과 불쾌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판단) 이 사건 제품의 변질은 포장재 불량으로 인한 공기 혼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피신청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변질된 제품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재산적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함께 구입한 이 사건 음료 4개 중 1개만 변질되었지만, 나머지 3개 음료는 이물질 발견으로 인한 불쾌감 때문에 마시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변질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인 제품 4개의 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 4,8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적 손해 배상액: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충분히 회복되지만(서울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판결 참조), 음료의 변질 사고는 혐오 물질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음료의 변질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오랫동안 음용했다는 사실과 제품의 변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 2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일회용 커피 음용 중 화상에 따른 치료비 배상 요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9. 3. 17:00경 △△편의점에서 피청구인이 제조한 일회용커피(카푸치노, 이하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여 뚜껑을 개봉한 후 편의점에 비치된 컵라면용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담아 제품을 들고 편의점을 나와서 마시려다 제품이 뜨거워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화상을 입었으므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함.

(판단) 피청구인은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신체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장하는 등 제품을 음용하는 소비자들이 온수로 인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그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 청구인의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의 제기

▪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하며,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 관한 종류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

4.1.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

4.1.1. 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식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세요

원산지표시 의무

▪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① 농수산물,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그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표시대상 확인
농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수산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7.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8.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9.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 표시 확인방법

▪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붙임딱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 자세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구분	원산지 표시방법
농수산물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통신판매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요

농수산물의 이력추적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란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을 생산하는 자나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항).

▹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나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기입

▹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기입하게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6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표 12).

구분	농산물
표지	
표시 항목	①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② 품목(품종):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③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④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⑤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 생산연도는 쌀만 해당합니다.

▪ 농수산물 이력정보 조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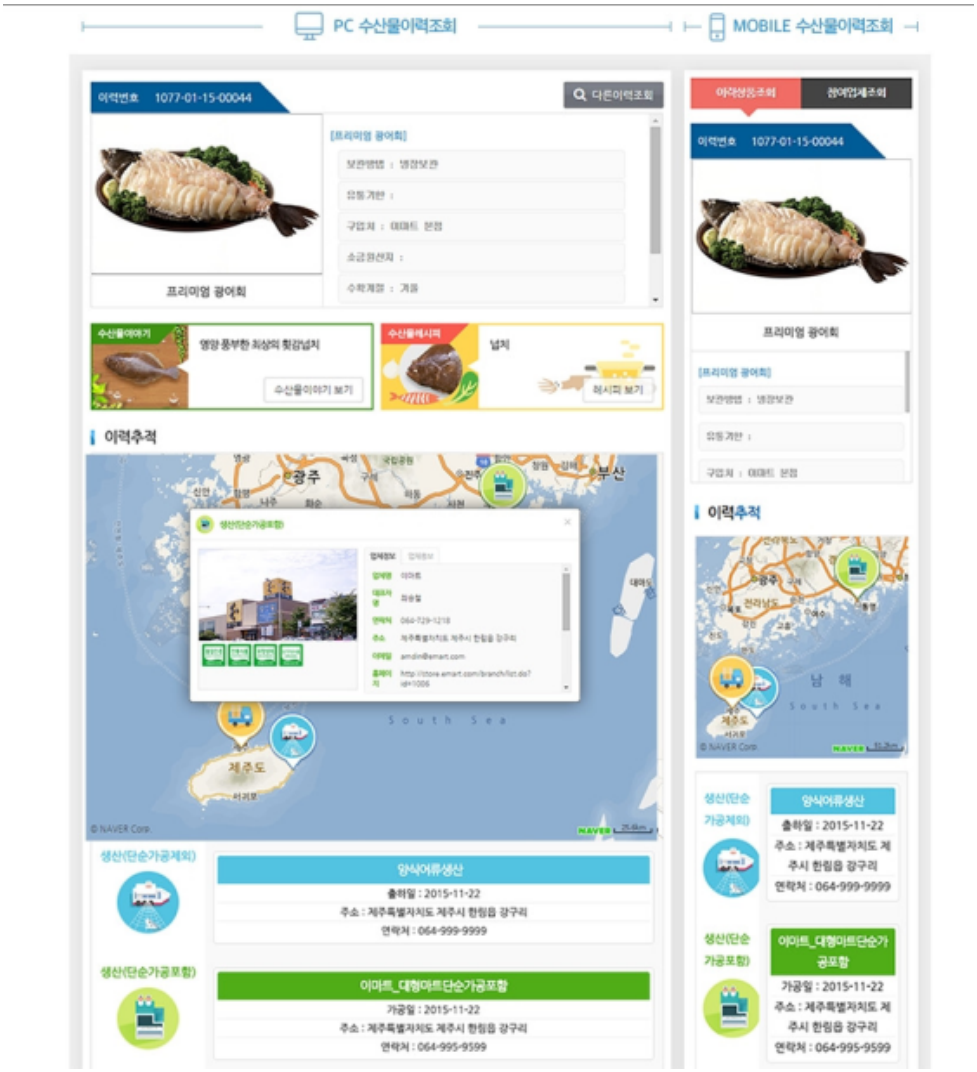
▹ 농산물의 이력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이력정보조회> 농산물 에서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산물의 이력정보는 수산물이력제 사이트(http://www.fishtrace.go.kr/)에서 상품에 표시된 이력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력정보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수산물이력제 사이트, 이력정보 조회방법>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추적

▪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 소비자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 표시>

▪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 쇠고기의 이력관리(개체별 이력관리)

√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함)와 소를 수입하는 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소를 수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고, 해당되는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을 붙여야 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귀표 등”이란 소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함]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

▹ 돼지고기의 이력관리(농장별 이력관리)

√ 농장경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으면, ①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나 ②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제1항).

※ 돼지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아 개체별 이력관리보다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농장식별번호를 매개로 한 농장단위로 이력관리를 합니다. 다만, 종돈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감안하여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 이력관리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4. 12. 25. 일자 보도자료 참조).

▪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함)을 도축해서는 안 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1항).

√ 귀표 등이 붙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돼지

√ 귀표 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이력관리대상가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

▹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력번호를 발급받으면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함)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함)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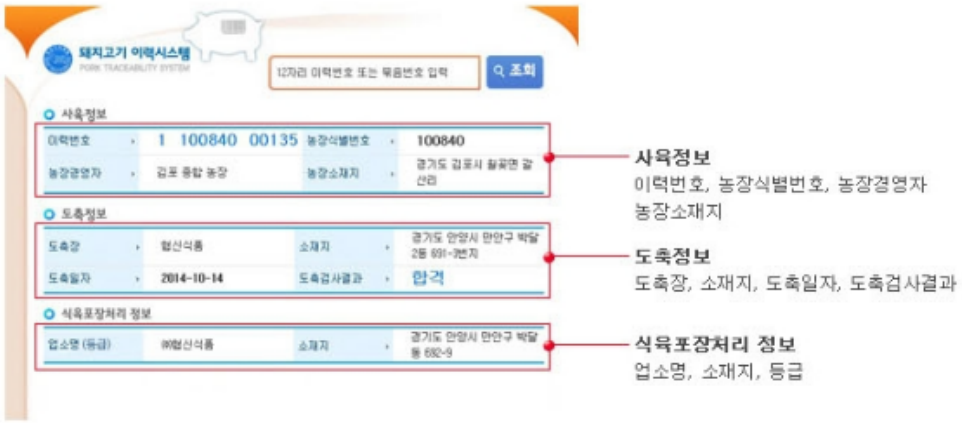
▪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정보조회 방법

▹ 구입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http://www.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조회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하면 구입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농축수산물 소비자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축산물 이력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식품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식품인증마크란

▪ "식품인증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식품의 질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보증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인증마크의 종류

▪ 식품인증마크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유기식품(유기농산물)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식품',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 기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제21조제1항 및 별표 6	
농산물 (임산물 포함)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농산물은 농약, 비료 등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별표 15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GAP)	√ GAP 마크는 생산단계에서는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분석하여 재배하며 수확 후 포장단계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에 표시하는 인증입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전통식품품질 (농산물)	√ 전통식품 품질(농산물) 인증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하여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지리적 표시제도	√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식품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물의 품질향상, 지역특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	

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유기식품 (유기 수산물)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식품”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수산물 품질인증	√ 수산물 품질인증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한 식품을 말합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별표 7	
	전통식품 품질 (수산물)	√ 전통식품 품질(수산물)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하여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식품을 말합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별표 5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 「축산법」 제42조의6제4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8	
	유기식품 (유기 축산물)	√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먹이고 항생제와 항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육한 축산물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6	
그 밖의 식품	HACCP	√ HACCP은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3	

4.1.2. 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식품 고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 식품은?

▪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함]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함)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11. 특수영양식품
12. 특수의료용도식품
13.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4.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5.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위의 식품 중 1.의 어육소시지, 4.의 과자·캔디류, 6.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함) 및 8.부터 13.까지의 식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①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②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③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위의 14.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④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위의 14.의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⑤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⑥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⑦ 위 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 위의 영업자 외에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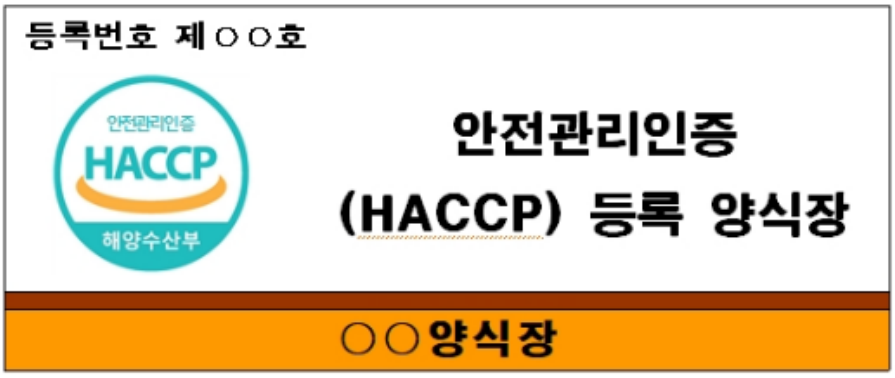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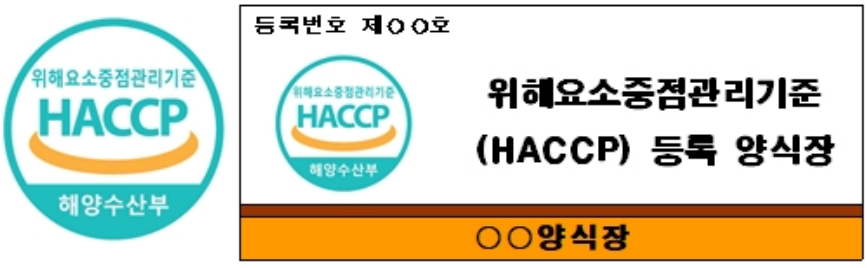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2항).

HACCP 마크 확인하기

▪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HACCP 적용식품 표시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7조제2호, 별표 8,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 및 별표 2).

▸ HACCP 적용식품 표시(인증 표시는 포장 색상에 따라 빨간색과 파란색 등으로 변경 가능)

▹ 심벌의 기관명 “해양수산부”를 “MOF KOREA”로 표시할 수 있음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인증 표시</th></tr>
<tr><td rowspan="2">현재 인증 표시</td><td>인증표시</td><td>
</td></tr>
<tr><td>지정업소 현판견본</td><td>
</td></tr>
<tr><td colspan="2">이전인증표시</td><td>
</td></tr>
</table>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표시 확인하기

가공식품의 산업표준(KS)인증이란?

▪ 가공식품의 산업표준(KS)인증은 가공식품의 제조에 적용되는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의 단순화·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https://foodcert.kfri.re.kr) 참조].

인증 신청 및 정기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자로서 산업표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마다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제40조제1항,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7호서식).

▪ 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KS인증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주기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고 있으며, 시판품 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산업표준화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매년(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매 3년

제품인증표시 확인하기

▪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KS인증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 ※ 가공식품 KS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http://foodcert.kf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고르기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서는 가공식품의 경우 ①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일 것과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일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② 영양에 관한 기준으로 열량·포화지방·당류, 단백질 함유량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별표 제1호 가. 및 제2호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확인하기

▪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품질인증마크가 표시되며, 이에 따라 식품 소비자는 품질을 인증받은 식품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 참고).



※ 그 밖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자연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농축수산물 소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3.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려면?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홍삼제품이나 비타민제, 영양제 등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건강기능식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 원료의 함량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위의 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1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인가?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다음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다음과 같은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에만 제품 포장에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3	우수한 품질의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GMP』 마크를 먼저 챙기세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12호마목 및 별표 2). √ 이는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이 일정기준을 통과한 식품에 부여하는 마크로서, 작업장의 구조와 설비는 물론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에 걸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체계적인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므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4	소비기한은 적절한지 확인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정보 참조>

▪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만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단서).

▪ 영업자는 표시해야 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정보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등록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도입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중 다음의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 2013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014년 12월 1일
- 2014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자: 해당 연 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45조제6호).

>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은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방법은?

▪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생산) 정보와 수입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를 얻으려면?

4.2.1. 올바른 어린이식생활 정보 얻기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세요!

영양성분 표시

▪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다음의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1. 제과·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 이러한 영양성분 표시 제도는 아이들의 영양불균형이나 비만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 영양성분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1. 열량
2. 당류
3. 단백질
4. 포화지방

- 나트륨
-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

▪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의 가공식품에 어린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영양정보 확인을 돕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활용하면 쉽게 좋은 영양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 및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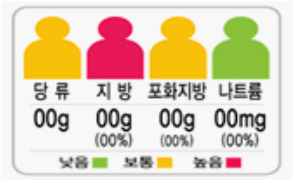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기준은 1회 제공량에 함유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2).

구분	등급	색상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간식용	낮음	녹색	3g 미만	3g 미만	1.5g 미만	120mg 미만
	보통	황색	3g 이상, 17g 이하	3g 이상, 9g 이하	1.5g 이상, 4g 이하	120mg 이상, 300mg 이하
	높음	적색	17g 초과	9g 초과	4g 초과	300mg 초과
식사 대용	낮음	녹색	3g 미만	3g 미만	1.5g 미만	120mg 미만
	보통	황색	3g 이상, 17g 이하	3g 이상, 12g 이하	1.5g 이상, 4g 이하	120mg 이상, 600mg 이하
	높음	적색	17g 초과	12g 초과	4g 초과	600mg 초과

▪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모양 표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됩니다(「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2).

구분	종류	
도안 1	 다만,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을 제외한 손바닥 도안 및 문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도안 2		
도안 3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제1항).

▪ 또한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제3항).